

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[별표 2] <신설 2019. 7. 19.>

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(제5조제1항 관련)

(단위: 퍼센트)

용어의 정의 및 구분			요율
1. 기준요율	제5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		연 0.20
	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·고정금리대출인 대출금		연 0.05
	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·고정금리대출이 아닌 대출금		연 0.30
2. 차등요율	금융기관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	175퍼센트 초과	+연 0.04
		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	+연 0.03
		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	+연 0.02
		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	+연 0.01
		100퍼센트	0
		75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	-연 0.01
		5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	-연 0.02
		25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	-연 0.03
		25퍼센트 이하	-연 0.04
3. 우대요율	금융기관이 주택수요자에게 주택금융을 공급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, 고정금리대출 또는 유한책임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함으로써 주택금융의 장기적·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제2호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적용하는 요율을 말한다.		-연 0.06부터 -연 0.01까지
4. 출연요율	제5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	기준요율	
	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	기준요율 + 차등요율 + 우대요율	

비고

1. "대위변제율"이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각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(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포함한다)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.
2. 그 밖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비고란의

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별표 1 비고란 제4호 및 제5호의 "주택금융신용보증
기금"은 "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"으로 본다.